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일상감사 의견 이행실태 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내 용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이하 “서울의료원”이라 한다) 감사실에서는 서울의료원 「감사규정」 제3조 제4항 및 「감사규정 시행내규」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에 따라 주요 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표 1]과 같이 2015. 1월부터 2018. 4월까지 2,210개 사업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65개 사업에 대해 시정·보완·검토하도록 일상 감사 의견을 제시(의견제시율 2.9%)하였다.

[표 1] 일상감사 실시 및 관리 현황

계		2015		2016		2017		2018. 4.	
실시 건수	의견제시	실시 건수	의견제시	실시 건수	의견제시	실시 건수	의견제시	실시 건수	의견제시
	조치결과 미제출		조치결과 미제출		조치결과 미제출		조치결과 미제출		조치결과 미제출
2,210	65	471	7	696	10	706	40	337	8
	50		2		9		31		8

서울의료원 「감사규정 시행내규」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일상감사 의견을 통보받은 사업부서의 장은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감사인은 감사의견 등에 대한 처리상황을 확인·점검 할 수 있으며, 「감사규정」 제3조 제5항에 따라 일상감사 내용은 일상감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 제16조에 따라 감사인은 사업부서에서 자료제출 요구 및 감사실시에 협조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활한 감사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의료원 감사실에서는 일상감사의 실효성 확보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감사의견을 제시한 사업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제출을 촉구하는 등 감사의견의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하여 감사의견 이행실태가 위법하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일상감사 내용 및 처리상황 등을 일상감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했다.

그런데 서울의료원 감사실에서는 [표 1]과 같이 감사의견 제시 65개 사업 중 50개(77%) 사업이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일상감사 의견의 적정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일상감사 처리상황의 기록·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아 일상감사의 체계적 관리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운영이 미흡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의료원 원장은 일상감사 의견 조치결과서 제출 확인, 감사의견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실시 및 일상감사 내용 기록·관리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